

의안번호	2215861
의 퇴 인	한지아의원
회 답 일	2026.3.3.
추 계 번호	26C0014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,36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6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약사정책심의위원회 (안 제18조의2)	33.6	33.6	33.6	33.6	33.6	168	33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(약사정책심의위원회)	○ 약사정책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.(제1항) ○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제2항) 1. 약국의 기능과 역할,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.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.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 4. 의약품 유통 및 판매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.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약사정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○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 (제3항) ○ 위원장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.(제4항) ○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5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8조의2 (약사정책심의위원회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, 위원회 구성, 운영 방법, 횟수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준용¹⁾
 - －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심의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방법, 절차, 기준 및 활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년간(2024년 7월~2025년 6월) 본회의 12회, 분과회의²⁾ 168회를 개최함
 - － 개정안은 약사정책심의위원회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본회의 개최 실적만을 준용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추가재정소요는 약사정책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

1) 개정안에 따른 약사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·의결하는 기능이 없고, 민간위원 위주로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함

2) 내과계, 외과계, 내·외과계외, 치과, 한방, 혁신의료기술, 근거창출전문위원회 등 총 7개의 분과위원회 운영

참석 수당을 추계하며, 이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-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
- (위원 정수)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은 정원 15인 중 14인으로 가정
 -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총 12인 중 11인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, 개정안은 민간 또는 당연직 위원 구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
- (회의 횟수) 연 1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- (참석 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³⁾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- 개정안에 따라 약사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,36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억 6,8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추가재정소요	33.6	33.6	33.6	33.6	33.6	168	33.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3) 기획재정부의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,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